

#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735
------------	-----

제출년월일 : '98. 1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및운영하고자 함.(안 제1조)
- 위원회의심의사항을 기존규제의심사,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등으로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함.(안 제3조 제1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하고 (안 제5조 제2항)  
위원장이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 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위원회참석 수당

- 산출내역 : 50,000원×6인×6회 = 1,8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 : 별첨

##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담당관,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발췌 서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